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담 당 자	정 태 호 사무관 (02-2100-2833) 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824)	
	금융위 은행과장 박 광(02-2100-2950)		김 성 진 사무관 (02-2100-2951)	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박 민 우(02-2100-2650)		김 성 준 서기관 (02-2100-2651)	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 진 창(02-2100-2990)		최 치 연 사무관 (02-2100-2991)	
	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전 요 섭(02-2100-2910)		강 성 호 사무관 (02-2100-2911)	
	금감원 감독총괄국장 이 준 호(02-3145-8300)		김 병 칠 팀 장 (02-3145-8001)	

제 목 :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

-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2018년 금융 모습 -

1.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.

< 취약차주 지원 강화 >

- ① **(최고금리 인하)**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(기존 27.9%), 사인간 금전거래(기존 25%)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%로 인하됩니다. **(2.8일)**
- ② **(연체前 원금상환 유예)** 실직·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유예(최대 3년)됩니다. **(2월)**
- ③ **(담보권 실행 유예)**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“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”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합니다. **(2월)**
- ④ **(미소금융 금리 우대)** 미소금융(운영·시설자금)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(연매출 3억원 이하)에 대한 금리가 우대(연 4.5%→연 4.0%)됩니다. **(‘17.12.1일~)**

<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>

- ⑤ (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)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 과정의 녹취·보관 의무화로 투자자(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)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. (1.1일)
- ⑥ (피해자 일괄구제제도)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,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집니다. (상반기)

<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>

- ⑦ (보험금 통합 조회) '내보험 찾아줌(ZOOM)' 시스템(cont.insure.or.kr)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. (' 17.12.18일~)
- ⑧ (실손보험 개편)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(35%→25%)되고(' 17.12.20일~),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. (4.1일)
- ⑨ (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)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 (1월)
- ⑩ (예금보험금 신속 지급)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크게(4개월 이상→7일내) 단축됩니다. (1월)
- ⑪ (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)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(14개중)하여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(1월)
- ⑫ (親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)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(시각 장애인용 바코드, 수화 설명 등)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(1~4월)

2.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됩니다.

- ⑬ (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)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(총 1조원 이상)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. (3월)
- ⑭ (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) 우수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하여 최대 1.5%p의 금리감면이 제공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(' 17.12.19~)
- ⑮ (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)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확대(1억→3억)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됩니다. (1월)

- ⑩ (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) 중견(또는 예비중견)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(상반기)
- ⑪ (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) 소득공제 대상 기업(창업 3~7년, TCB 우수기업 추가)이 확대되고,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됩니다. (1.1일)

3.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합니다.

- ⑫ (ISA 세제혜택 확대)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확대(250만→400만, 일반형 200만)되고,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집니다. (1.1일)
- ⑬ (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) 과거 치료기록이나,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 (2분기)
- ⑭ (금융규제테스트베드)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·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. (상반기)
- ⑮ (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) 은행,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, 저축은행,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(www.payinfo.or.kr)를 통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집니다. (하반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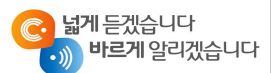
4.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됩니다.

- ⑯ (新DTI 시행) 주택담보대출 취급시,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(DTI)에 반영됩니다. (1월)
- ⑰ (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)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(RTI : 주택 1.25배, 비주택 1.5배)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. (3월)
- ⑱ (대출모집인 규제)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,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됩니다. (1.1일)
- ⑲ (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)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(복제불가 등)이 가능해집니다. (7.21일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rfsc@korea.kr



[붙임 1]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. 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.				
1	법정 최고금리 인하(연 24%)	(현행) ○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연 27.9%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 ○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연 25%의 법정최고금리를 적용 (개선) ○ '18.2.8.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를 연 24%로 인하(△3.9%p) ○ '18.2.8.부터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를 연 24%로 인하(△1%p)	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(‘18.2.8.)	법무부 상사법무과 (2110-3256)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2100-2612)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(3145-6774)
2	원금 상환 유예 (은행권)	(신규) ○ 실직·폐업·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(주담대, 신용대출 등)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(최대 3년)	은행권 가이드라인 (‘18.2월)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2100-2835)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(3145-8040)
3	담보권 실행 유예 및 담보물 매매 지원	(신규) ○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 하고,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담보주택 매매 지원	신용회복위원회 협약 (‘18.2월)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2100-2835) 신용회복위원회 (750-1071) 자산관리공사 (051-794-3040)
4	영세가맹점 미소금융 우대금리 지원	(신규) ○ 미소금융 운영·시설자금을 이용중 (17.12.1. 이후 대출 시행)인 영세가맹점주 (연 매출액 3억원 이하)에 대한 금리를 0.5%p 우대(연 4.5%→연 4.0%)	‘17.12.1. * '18.4월 이자 우대분 환급 개시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00-2995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전 분기에 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 각 분기초(1/4/7/10월)에 0.5%p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※ 지원기관 :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(서민금융진흥원 협조) ※ 기대효과 : 20억원으로 약 1.4만명(1인당 평균 13.8만원)을 지원 		<p>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(2138-1802)</p> <p>서민금융진흥원 (2128-8086)</p>
5	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	<p>(현행)</p> <p>○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에 따라 투자자 피해 발생우려* 증가</p> <p>* 특히,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거래가 판매되어 적합성.적정성 원칙 훼손 우려</p> <p>(개선)</p> <p>○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·보관하도록 의무화</p> <p>*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 부과</p>	자본시장법 시행령 (‘18.1.1)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(2100-2655)
6	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	<p>(신규)</p> <p>○ 다수인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하여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,</p> <p>-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구제</p>	’18.상반기	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(3145-5212)
7	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* 내보험 찾아줌(ZOOM)	<p>(현행)</p> <p>○ ‘17.10월, 숨은보험금*이 약 7.4조원이 있으나, 주소불명,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찾아가기 어려운 측면</p> <p>*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,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중도/만기/휴면보험금</p>	-	<p>금융위원회 보험과 (2100-2962)</p> <p>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(3145-7471)</p>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 개시(12.18일~) [내보험 찾아줌(ZOOM) 시스템 오픈] * 접속자 집중(1주일간 약 2.1천만건의 접속시도) 등으로 원활한 처리에 아직 한계 ○ 시스템 처리용량을 추가적으로 4배 이상 확대하는 서버증설 작업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 		<p>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(2262-6645)</p> <p>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(3702-8670)</p>
8	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 규제 및 끼워팔기 금지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35%까지 조정 가능 ○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여타 보험 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연간 25%로 축소 ○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 	<p>보험업 감독규정 (보험료인상폭: '17.12.20, 끼워팔기금지 : '18.4.1)</p>	<p>금융위원회 보험과 (2100-2964)</p> <p>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(3145-8246)</p>
9	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인·대물배상 담보(사고피해자 구제 부분)만 공동인수 의무화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·자차도 일정기준 충족 시 반드시 공동인수하여,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※ 자기차량손해, 자기신체사고, 무보험차상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5년내 음주·약물·무면허·보복운전,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 - 최근 3년내 자동차보험료를 면탈 -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2회 이상 ※ 자기차량손해 추가 가입제한 가능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가차량, 대형이륜차(260cc ↑) -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 있는 이륜차 	'18.1월	<p>금융위원회 보험과 (2100-2964)</p> <p>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(3145-7466)</p> <p>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(3702-8591)</p> <p>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 (368-4276)</p>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0	예금보험금 7영업일내(신속) 지급시스템 구축완료	<p>(현행) ○ 예금보험금 지급까지 4개월 이상 소요</p> <p>(개선) ○ 금융회사 인가취소 등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한(7영업일내)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「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」을 구축</p> <p>*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에 대상 구축 완료</p> <p>※ 현재 국회계류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(이학영 의원)에 보험금 신속지급에 대한 근거조항 포함</p>	'18.1월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(2100-2903) 예금보험공사 정리총괄부 (758-0302)
11	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	<p>(신규) ○ 외국인이 14개 언어*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민원을 제출하면,</p> <p>*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몽골어, 태국어, 우즈베키스탄어, 방글라데시어, 캄보디아어, 스리랑카어, 네팔어, 러시아어, 버마어(미얀마)</p> <p>- 금융감독원이 이를 번역하여 민원을 처리하고, 처리내용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회신</p>	'18.1월	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총괄국 (3145-8520)
12	장애인 대상 예금보험제도 안내/홍보 확대	<p>(신규) ○ 예금자보호제도 홍보자료 등에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를 삽입하여, '읽어 주는 방식'의 예금보험제도 설명 방법을 도입</p> <p>○ 수화를 통한 예금보험제도 설명/안내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도 쉽게 예금보험제도 내용을 전달 (홍보 대상 확대)</p>	'18.1월 '18.4월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(2100-2903) 예금보험공사 홍보실 이지현 팀장 (758-0032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2.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됩니다.				
13	기업구조 혁신펀드 구성	<p>(신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 이외에도 자본시장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를 조성 - 조성규모 : 총 1조원 이상 - 투자대상 : 중소·중견기업 위주 * 워크아웃,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추진 중이거나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동성 부족 기업 등 	'18.3월	<p>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(2100-2936)</p> <p>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(2090-9121)</p>
14	창업·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	<p>(신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대출·컨설팅·멘토·투자자 등 종합 금융 지원플랫폼인 'IBK창공(創工)' 개소 - 대출·투자조건 우대 - 사업설명회 및 IR 개최 지원 등 판로개척 지원 -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○ 창업·벤처기업들의 Death-Valley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'IBK벤처 Start-Up대출' 출시(최대 1000억원) - 창업 7년 이내 우수 창업·벤처기업 대상으로 최대 1.5%p 수준 금리감면 	'17.12.19	중소기업은행 (729-7750)
15	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한정하여 특화보증프로그램*을 운용 * 보증금액 1억원 한도에서 보증료,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여 지원 	내규 시행 (18.1월)	신용보증기금 (053-430-4335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		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 -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를 운영하고, 기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를 확대(1억원→3억원)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 		
16	중견(예비)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 대상기업 및 우대범위 제한적 - 수출 중소기업 중심 - 금리우대 등 단편적 지원방식 적용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의 성장단계 및 개별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* 도입 * 예비중견(①해외진출형, ②미래신성장형) 중견기업(③글로벌중견형) ○ 지원계획 - (목표기업) 200개 기업 선정·육성 - (당행지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(금리우대 등) · 경영컨설팅 제공 · 파생, 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 - (타기관 연계) 산업부 등 정부부처 및 타 기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	('18년 상반기)	산업은행 영업기획부 (787-6925)
17	클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중소기업* 투자시 소득공제 (엔젤투자 소득공제) * 기보.중진공 기술성 우수평가 기업, R&D 투자금액 3천만원 이상 기업 등 	조세특례 제한법 (‘18.1.1)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2100-2672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																	
		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엔젤투자 중 클라우드펀딩의 경우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*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 부여** <p>* TCB 우수기업까지 대상 확대 ** 소득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현 행</th> <th rowspan="4">⇒</th> <th colspan="2">개 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500만원 이하</td> <td>100%</td> <td>3천만원 이하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1,500만원~5천만원 이하</td> <td>50%</td> <td>3천만원~5천만원 이하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</td> <td>30%</td> <td>5천만원 초과</td> <td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현 행		⇒	개 정		1,500만원 이하	100%	3천만원 이하	100%	1,500만원~5천만원 이하	50%	3천만원~5천만원 이하	70%	5천만원 초과	30%	5천만원 초과	30%		
현 행		⇒	개 정																		
1,500만원 이하	100%		3천만원 이하	100%																	
1,500만원~5천만원 이하	50%		3천만원~5천만원 이하	70%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	30%		5천만원 초과	30%																	

3.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증가합니다.

18	<p>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(ISA) 비과세한도 확대, 중도인출 허용</p>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SA 계좌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계좌는 200만원, 서민형계좌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<p>* 초과분에 대해서는 9% 분리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의무가입기간(3~5년) 내 중도인출시 과세특례 미적용(세금 추징)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를 일반형의 2배 규모인 400만원으로 확대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	<p>조세특례 제한법 (‘18.1.1)</p>	<p>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2100-2672)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(3145-6704)</p>
19	<p>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출시</p>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이라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, 사실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불가능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장공백 해소를 위하여,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·출시 	<p>‘18.2분기</p>	<p>금융위원회 보험과 (2100-2964)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(3145-8246)</p>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20	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본격 시행	(신규) ○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*에게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 테스트 시행 * 금융위가 일정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 ○ 금융혁신지원 특별법*을 제정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·시행 * '18.상반기중 국회 제출.심의	'18.상반기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(2100-2974)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(3145-7425)
21	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확대	(현행) ○ 은행 계좌, 보험 가입내역, 카드 발급 내역, 대출정보(대부업체 제외), 상호 금융 계좌를 대상으로 조회가능 (개선) ○ 증권사, 저축은행, 우체국으로 조회 대상 확대 ※ www.payinfo.or.kr	'18.하반기	금융위원회 은행과 (2100-2953)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(3145-8215)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 (531-1720)

4.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됩니다.

22	新DTI 시행	(현행) ○ DTI(총부채상환비율)에 신규로 취급 되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만 반영 (개선) ○ DTI 산식을 개선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 - (부채)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 반영 - (소득) ①인정(국민연금, 건보료 납부 내역 등)· 신고소득(카드사용액 등)을 각각 △5%, △10%씩 차감, ②장래 소득 증가 예상시 장래소득 증 가분 반영 가능	은행업 등 5개 금융업감독규 정 및 시행세칙 ('18.1월)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2100-2835)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(3145-8040)
----	---------	--	---	--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23	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(은행권)	<p>(신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(Rent to Interest)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 심사 (RTI 기준 : 주택 1.25배, 비주택 1.5배)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*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“유효담보가액 초과분”을 매년 1/10씩 분할상환 <p>* 유효담보가액 = 담보기준가액 × 담보인정 비율 - 선순위 채권액(임차보증금 등)</p>	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(18.3월)	<p>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2100-2835)</p> <p>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(3145-8045)</p> <p>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(3705-5704)</p>
24	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 규제	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의 신용대출 관련 ‘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’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, 대출권유시 ‘모집수수료를 확인 방법’(상품설명서 등) 안내 등 설명의무 확대 	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(18.1.1.)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(3145-8001)
25	신용카드 단말기는 IC등록단말기만 사용 가능	<p>(현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전법 개정 (15.7.21)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(예 : “IC등록단말기”)를 ‘18.7.20까지 설치·이용하여야 함 - ‘18.7.20이전까지는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단말기도 사용이 가능 <p>(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18.7.21.부터는 IC등록단말기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음 -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때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,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제한 등으로 카드결제 이용이 제한됨 	여신전문 금융업법 (18.7.21~)	<p>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2100-2995)</p> <p>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(3145-7435)</p>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									
	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42 224 1021 414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542 224 702 291">구분</th> <th data-bbox="702 224 861 291">'15.7.21.~ '18.7.20</th> <th data-bbox="861 224 1021 291">'18.7.21~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42 291 702 347">기존 단말기</td> <td data-bbox="702 291 861 347">사용 가능</td> <td data-bbox="861 291 1021 347"><u>사용 불가</u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42 347 702 414">IC등록단말기</td> <td data-bbox="702 347 861 414">사용 가능</td> <td data-bbox="861 347 1021 414">사용 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data-bbox="526 436 1045 515">※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무상으로 IC단말기 전환을 지원중</p>	구분	'15.7.21.~ '18.7.20	'18.7.21~	기존 단말기	사용 가능	<u>사용 불가</u>	IC등록단말기	사용 가능	사용 가능		
구분	'15.7.21.~ '18.7.20	'18.7.21~											
기존 단말기	사용 가능	<u>사용 불가</u>											
IC등록단말기	사용 가능	사용 가능											